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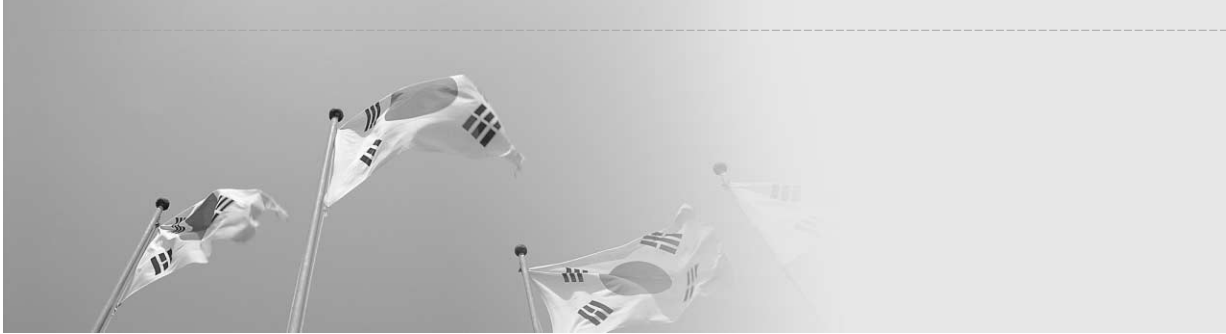
200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연번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 농업정책자금 취급은행 확대	• 협동조합 등 주로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농업정책자금 지원	• 농업정책자금 취급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정책자금 공급체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 - '06년도에는 RPC 운영자금 및 농기계 구입자금 등 2개사업자금의 취급은행을 개방하여 농업인이 스스로 거래은행을 선택토록 개선 - 향후 정책자금 취급은행 확대 성과를 평가하여 여타 자금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추진	• 농신보 신용보증규정, 농특회계 융자업무지침, 농림사업 시행지침 ('06.1.1)	농림부 협동조합과 (500-1696)
7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제한 ① 대표이사가 농업인 ②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1/20이상인 농업인 ③ 농업인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2이상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일부를 완화 ① 대표이사가 농업인 ②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1/20이상인 농업인 ③ 농업인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40이상인 경우	• 농지법('06.1.22)	농지과 (500-1670)
15	• 축사설치 시 농지 전용 규제 완화	• 농지를 전용하여 축사설치 시 제한사항 -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지전용신고시 면적을 제한(양돈·양계 3ha, 기타 1ha), 농업진흥지역안 축사설치시 1ha초과분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 50% 부과	• 축사설치시 농지전용 규제 완화 ①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전축종 3ha까지 신고 전용 허용 ② 농업진흥지역안에서 3ha까지 축사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3ha를 초과하는 부분만 50% 부과)	• 농지법시행령 ('06.1.22)	농지과 (500-1674)
17	•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경우 이를 생략 • 관리(생산·보전)지역·농업진흥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 농지전용허가제한 기준을 운용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수준과 상이 • 지전용 면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권한을 위임 *농업진흥지역밖 시·도지사 허가권한 : 3ha~10ha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 *읍·면지역외의 녹지지역→모든 녹지지역, 전용면적의 증감이 있는 변경협의→면적이 증가하는 변경협의 • 농지전용허가제한 기준을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행위제한 수준에 맞추어 조정 *(현행) 농지전용면적 제한 : 7단계→(개정) 5단 *관리지역이 미세분된 지역에 대해서는 세분시까지 현행 허가제한 규정을 적용 • 농지전용허가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범위 확대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시·도지사의 전용허가권한 위임 확대 *(현행) 3ha~10ha → (개정) 3ha~20ha	• 농지법시행령 ('06.1.22)	농지과 (500-1674)



▣ 농촌정책국

연번	제목	중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8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아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40% 경감지원 -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읍·면지역 - 시(市)의 동(洞)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 특별시·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50% 경감 지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시행지침 ('06.1.1)	농촌사회과 (500-2082)
29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범위 간소화	•제출서류(6종) : 주민등록등본 등 6종	•제출서류(1종) : 신청서 1장만 제출 - 감축되는 서류는 G4C 등 정부전산망으로 확인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지침 ('05. 1. 1)	농촌사회과 (500-2087)

▣ 축산국

연번	제목	중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0	•외국유학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외국의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외국의 수의과대학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수의사법 ('05.12.1)	가축방역과 (500-1933~4)
31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 처분 사유 변경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수의사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한 때 •기타 수의사법 또는 수의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제제)를 처방·투약한 때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수의사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한 때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때 •학위수여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때 •과잉진료행위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	•수의사법 ('05.12.1)	가축방역과 (500-1933~4)
32	•면허효력정지 처분에 따른 진료업의 금지	〈신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아도 당해 병원에 고용된 다른 수의사에 의해 영업행위를 계속할 경우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없게 되므로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정지기간 중에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함	•수의사법 ('05.12.1)	가축방역과 (500-1933~4)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연번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의표시기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2005-10호 : 2005.9.23) 	<p>가. 축산물가공품중 원재료의 함량 표시 [별표1. 1. 가. (8). (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명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 그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을 표시 <p>나. 포장육 및 수입식육의 유형 표시[별표1. 1. 가. (2). (나)] <산설></p> <p>다. 조사처리 축산물에 대한 표시 [별표1. 1. 가. (11). (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처리된 축산물임을 나타내는 직경 5센티미터이상의 조사도안을 표시 <p>라. 식육가공품의 개별표시 [별표1. 2.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가지 이상의 원료식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료식육 일부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산설> <p>마. 유가공품의 개별표시 [별표1. 2. 나] <산설></p> <p>바. 축산물가공품의 원재료 표시 [별표1. 1. 가. (8).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위적으로 가향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함 <p>사. 축산물가공품 영양표시 의무화[별표1. 1. 가. (10).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소비 제품에 대한 영양소 표시 의무화 :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주표시면에서 특정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식육의 종류(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와 부위명(안심, 목심, 앞다리 등)의 표시 의무화 조사처리 축산물에서 조사도안은 주표시면에 표시 조사처리된 원재료 사용시 원재료 표시란에 '조사처리된 ○○○'으로 표시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를 제품명으로 사용가능 비가식케이스의 소비자 안내 표시 조제유류의 영양표시는 영유아에게 먹이는 조제방법에 따라 100ml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음 기타조제유류의 영양성분 함량표시 사용된 모든 원재료명 표시 - 예외 : 주표시면이 30cm²이하 제품은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만을 표시, 총 중량비율이 5%미만인 복합원재료는 복합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 다소비 제품에 대한 영양소 표시 의무화 대상 6가지 추가(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의표시기준(06.10.1) 	<p>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031-467-1761)</p>

(15) 축사 설치시 농지전용규제 완화

농림부 농지과 (☎02-500-1674)

- 그동안 농지를 전용하여 축사설치 시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하고, 축산을 하는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06. 1. 22부터는 축사설치 관련 농지전용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 (현행)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지전용신고시 면적을 제한(양돈·양계 3ha, 기타 1ha), 농업진흥지역안 축사설치시 1ha초과분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 50% 부과
- (개선)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축종 구분없이 3ha까지 신고전용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안에서 3ha까지 축사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3ha를 초과하는 부분만 50% 부과)
- 축사관련 농지전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투자를 촉진하고, 무분별한 축사의 난립을 억제하여 우량농지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31)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 처분 사유 변경·추가

농림부 가축방역과 (☎02-500-1933~4)

- 2005년 12월부터 수의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의사면허효력이 1년 이내에서 정지됩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제제)를 처방·투약한 때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
- 정당한 이유없이 수의사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된 때
-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때
- 학위수여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때
- 과잉진료행위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

(32) 면허효력정지 처분에 따른 진료업의 금지

농림부 가축방역과 (☎02-500-1933~4)

- 2005년 12월부터 동물병원개설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제제)를 처방·투약한 경우,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사유로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정지기간 중에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33) 축산물의 표시기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031-467-1961)

- 2005.9.23일 개정된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5-10호 ; 2005. 9. 23)에 따라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내년 10월부터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축산물가공품중 원재료의 함량표시[별표1. 1. 가. (8). (나)]
 -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주표시면에서 특정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 포장육 및 수입식육의 유형표시[별표1. 1. 가. (2). (나)]
 - 식육의 종류(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와 부위명(안심, 목심, 앞다리 등)의 표시의무화
- 조사처리 축산물에 대한 표시[별표1. 1. 가. (11). (나)]
 - 조사처리 축산물에서 조사도안은 주표시면에 표시
 - 조사처리된 원재료 사용시 원재료 표시란에 “조사처리된○○○”으로 표시
- 식육가공품의 개별표시[별표1. 2. 가]
 -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를 제품명으로 사용가능
 - 비가식케이싱의 소비자 안내 표시
- 유가공품의 개별표시[별표1. 2. 나]
 - 조제유류의 영양표시는 영유아에게 먹이는 조제방법에 따라 100ml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음.
 - 기타조제유류의 영양성분 함량표시
- 또한 개정된 고시에 따라서 2007.1.1일부터는 햄과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에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여야 하며,
 - ※예외 : 주표시면이 30cm²이하 제품은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만을 표시. 총 중량비율이 5% 미만인 복합원 재료는 복합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
-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축산물가공품에는 영양소 표시가 의무화 됨.[별표1 제1호 가목 (8) (가)의 규정, 제1호 가목 (10) (가) 1) 및 2)] 